

#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시/장소	2021. 9. 9.(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업명	동대문구 청량리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5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13-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APT평면 수평디어프램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건물 및 주차장 사이의 응력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거동을 고려하여 변형량을 흡수할 수 있는 상세도를 검토하기 바람.
- 전이부재에 벽체강성을 배제한 하중조합과 특별지진하중 조합에 의한 응력 값을 비교한 후 설계에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
- 설비배관설치로 인해 전이부재의 수직관통에 대한 구조검토를 확인하기 바람.
- 편토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철근( $f_y = 600Mpa$ )을 사용할 경우 규준에 의한 부재설계를 검토하기 바람.
- 지반조사 결과 지층의 차이가 커서 지하수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배수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 전이층 바닥에 기계 및 전기 배관을 위한 개구부가 형성되어 전이층 바닥의 배근에 간섭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기 바람.
- 지붕 구조평면도(예: 105동)의 철골부재가 장식을 위한 비구조체인지 구조체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철골부재에 대한 접합 및 상세를 추가하기 바람.
- 건축구조기준 KBC2016을 적용하였는데 KDS41 미적용 근거를 확인하기 바람.
- 전이보 표피철근은 개수로 표현하고 전이보와 설비간섭에 대한 상세 추가하기 바람.
- 전이기둥은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와 별도로 특별지진하중 적용상세(필로티 기둥상세)를 구조설계서 및 구조도면 일반사항에 추가하기 바람.
- 전이기둥 후프철근 수직간격 @300을 @150으로 적용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지붕층은 소방차량 및 이사차량 등 고하중 차량을 고려해 설계하기 바람. (계속)

- 특수구조건축물의 경우 착공 후 시공시 구조설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나 건축주는 설계자(해당 건축물이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시공시 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건축구조설계자는 시공시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관련 내용을 본 위원회에 확인받기 바람).
- 103동과 y2~3열의 보강의 경우 기둥과 기둥 간격이 5m 정도로 조밀하여 보강길이를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전이슬래브의 불균형 모멘트를 고려한 전단보강을 검토하기 바람.
- (B-B')의 일부 구간 풍화토에 기초선단이 놓이게 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므로 고층부 지지력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바람(PT P.64).
- 전이보의 횡방향철근지수(Ktr)를 확인하여 주근 간격이 만족하는지 검토하기 바람.
- 벽체 중 수직철근비가 압축력에 대하여 1%를 넘는 경우 횡방향 띠철근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바람(KDS 14 20 72 콘크리트 벽체 설계기준 4.2 최소철근비 (6)항).
- SD500의 135° 갈고리 굽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바람(폐쇄형스트립에 사용).
- Y1열의 X13~X17구간의 차량진출입구간의 배치 및 외벽 표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계획에 따라 작성하기 바람(상부 지하1, 2층은 표기되어 있으나 지상부 외벽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층의 평면도에 동일한 표기가 필요함)(PT P.12~13).
- 101동의 평면과 단면이 상이하므로 수정하기 바람(단면에 의하면 101동 기준층은 지하2층 주차장 레벨에 표기되어야 하고, 단면상으로 지하3, 4층에 101동 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평면도에는 기준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평면도에 필로티로 표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PT P.9, P.12, P.13).
- 단면에서 각 주동 1층 필로티가 평면도에서는 기준층으로 표현되어 있어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바람(구조도면에도 각 주동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어 구조도면과 건축도면이 상이함)(PT P.8~15).
- 지하1층, 2층의 부대복리시설의 일부 전이보 구간의 구조부재의 크기를 단면에 반영하여 부대복리시설의 유효천장고가 확보되도록 하고 부대복리시설 상부 설비 점검 통로를 확보하기 바람. 끝.